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따른 연구성과와 과제 : 음악분야

이 보 형\*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문제점과 해결책 |
| II. 성과 |               |

## I. 서론

1963년에 종묘제례악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이래 4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문화재청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분야에 수많은 종목을 지정하였고 수많은 기예능보유자를 인정하였고 전수자를 인정하여 이수시키고 전수보조자를 인정하여 전수 관리와 전승 활성화 작업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인멸 위기에 있는 수많은 종목을 회생시켜 전승의 길을 열고 국민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과 그 가치 인식을 심어 준 것은 큰 업적이라 할 것이다.

필자는 중요무형문화재 가운데 음악 부문의 개념정리와 홍보, 지정 체제 운영, 전승 관리와 같은 여러 작업에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 II. 성 과

중요무형문화재에는 음악, 무용, 연극, 공예기술 등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이 가운데 음악 분야는 지정 종목의 수나 인정 기예능보유자의 수나 문화적 기능으로 보나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음악 분야로 지정된 종목에는 종묘제례악, 판소리, 대금정악, 선소리산타령, 경기민요(경기잡가), 서도소리, 남도들노래, 농요, 농악, 가곡, 가사, 가야금산조와 병창, 거문고산조, 대금산조, 대금정악, 범패(영산재), 문묘제례악 등 수많은 종목에 이른다. 음악과 함께 연행되는 다른 분야의 종목까지 이룬다면 풍어제, 진도씻김굿, 강

\* 전 문화재전문위원

능단오제, 경기도당굿, 서울진오귀, 황해도철몰이굿, 평산소놀이굿과 같은 굿, 봉산탈춤, 동래야류, 통영오광대와 같은 가면극, 강강술래, 양주소놀이굿과 같은 민속놀이, 승무, 살풀이춤과 같은 무용 등등 음악과 관련된 중요무형문화재 분야는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종목 가운데 문화재 지정관리로 말미암아 인멸 전에 회생시킨 종목이 많다.

무형문화재의 음악 부문에서 지정 관리하므로 말미암아 지금과 같은 전승이 되고 있는 종목이 많다. 전통사회에서는 많은 종목이 사회문화 행위로 공연문화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 조치하지 않아도 자연 전승되었던 것이나 근대화 이후로 그 공연문화가 변동되거나 붕괴되면서 대부분의 분야가 인멸 위기에 있게 되었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전승 관리에 나선 것도 이에 대한 전승의 길을 열기 위한 것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종목이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전승문화를 생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경기민요의 경우에는 실제 지정된 것은 경기 긴잡가인데 이 종목은 지정 당시 인멸 직전에 있었으나 지정 뒤에 이 종목은 대학 국악과 경기소리 전공실기에서 필수 학습 과정이 되었고 경기소리 중요 경연종목으로 되었다.

전통사회에서는 지정종목이 거의 가업으로 전승되거나 도제제도로 전승되었으나 근대 이후에 이런 종목의 학습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자각하고 후계자가 거의 없었으나 문화재 제도가 정착되고 사회에서 문화재 인식이 달라진 뒤에 전수생·이수생의 지망자가 많아졌다. 특히 대학교 전공과목으로 된 지정종목의 경우에는 대학교 교수들이 전수생·이수생이 되고자 지망하는 이들이 많다.

전통사회에서 공연예능나 공예기능을 대우하지 못하는 관습 때문에 기예능 그 자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 그 보유자 또한 사회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많았으나 이런 분야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이런 분야의 인식이 바로 잡힌 공로는 지대하다. 그리고 이런 종목의 전승 의지를 키우는데도 지대한 공로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음악의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으로 음악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향상되었고 지금은 인정된 기예능보유자들이 음악대학 교수로 임명되는 특혜까지 입게 되었다.

문화재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많은 전통음악 부문이 대학교 국악과 전공과목으로 채택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화재 제도가 생기면서 대학교 전공과목으로 채택되는 데 기여하였다. 정악, 정가, 판소리, 산조는 일찍 전공과목으로 채택되었지만 근래에는 긴잡가, 선소리, 병창, 타악 등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대학에서는 굿, 농악, 가면극 등과 같은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종목의 전공과목 채택이 가능해 진 것이다.

### III. 문제점과 해결책

기예능 보유자에 대한 개념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음악 분야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말에 중요무형문화재라는 말이 없었듯이 그 개념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정리되고 나서 지정관리 작업을 벌인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용어는 학술 용어로 외국에서 조어진 것이고 일본을 통하여 그 개념이 유입되었던 것으로 안다. 필자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로 인정된 이를 '인간문화재'라 하였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작업을 벌이기 이전에 이미 이 용어를 빌어 '인간문화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보유자를 인간문화재라 부르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체는 그 기예능이고 기예능보유자는 그 기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예능인일뿐이지만 중요무형문화 기예능보유자를 인간문화재라 부르게 되면서 기예능보유자 사람자체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된 것으로 안다. 그 결과 기예능보유자는 그 인정이 국가에서 공훈자로 녹을 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전수와 공연활동의 의무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기예능보유자가 노환이나 사고로 기예능을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기예능보유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것인데도 본인도 사퇴한 예가 없고 당국에서도 사퇴시킨 예가 없다. 이것은 잘못 인식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어야 했다.

지금까지 많은 문화재가 지정되고 전승되는데 성과를 거둔 것은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노력과 또 문화재위원과 같은 전문가들의 헌신에 힘 입은 것이다. 문화재는 특수 전문분야므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전문가를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음악전문가가 바로 음악부문 문화재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음악전문가이면서 문화재에 대한 학문적 학습과 문화재 공연, 전수, 관리 현장학습이 있어야 음악부문 문화재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이런 음악부문 전문가이면서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라야 음악부문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음악전문가는 많지만 음악부문 문화재전문가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음악부문 문화재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젊은 음악 학자들을 대거 문화재전문위원에 임명하고 무형문화재 공연에 초대하여 현장 교육시키도록 하고 문화재관계기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전문서나 해설서를 배부하여 전문가로 양성하고 이들 가운데 전문화된 이를 선택하여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재청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재전문위원을 양성하는 작업에 소극적이었고 문화재 전문가가 아닌 학자들을 문화재 위원으로 임명하여 문화재 지정 관리에 역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일이 있다. 더구나 정치적 압력에 의하여 문화재위원이 임명되는 일이 있는데 불행한 것은 이런 것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의 제어를 위한 원로문화재자문회 같은 것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화재전문가 양성 정책을 펴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 외부로부터 위원 위촉 압력에 자유롭기 위해서는 문화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문화재위원·전문위원을 위촉자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이들이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과거에 문화재에 대한 편견으로 굿을 미신이라 하여 지정을 반대한다든가 남해안별신굿을 남해안풍어제라 하듯이 굿을 굿이라 이르지 못하고 제라 하여 이른 것이라든지 하는 그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은 그런 잘못된 인식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당국이나 사회에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있어 문화재 관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 지정관리 정착 단계라 할 수 있는 1970년대에는 정기적으로 기예능보유자와 전수생으로 하여금 전수일지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위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전수 현장에 출장하여 전수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자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근래에는 전수작업을 기예능보유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어 전수일지보고서 제출의무도 사라지고 전수실태 점검도 없어졌다.

당시에는 기예능보유자와 이수자 및 전수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발표공연을 하도록 하고 위원들로 하여금 전수 평가하도록 하였고 전수생들이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수평가결과에 의하여 이수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기예능보유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여도 당국에서 이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고 바른 처방을 내기 어렵게 되었다.

영산재 및 별신굿과 같이 음악 무용 의식이 함께 진행되는 종목의 전승 상태 점검에서 흔히 음악 무용과 같은 공연특성에 대한 안목이 없는 학자들이 현지 조사에 출장하여 전승 상태를 점검하여도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공연특성이 단절되거나 왜곡되어도 이를 판단하지 못하거나 판단한다 하여도 제대로 처방을 내리지 못하여 문화재 전승에 어려움을 주는 예가 있다. 그런 사례는 많다. 이 가운데 은산별신제를 예로 들자면 본디 은산별신제의 무가는 세습무의 살풀이 신님장단의 무가가 전승되던 것이나 세습무가 작고하여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자 차선책으로 강신무를 선발하여 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 음악이 살풀이 신님장단이 아닌 앓은반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되었어도 현지에 출장하여 평가한 위원들이 이를 방치한 것을 보면 이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 종목에서 감지하였다 하여도 전문가가 아니면 그 처방을 내릴 수 없

다. 그 처방은 음악전문가이며 동시에 문화재전문가만이 가능한 것이다. 근래에 문화재청에서 이 종목의 전승점검에 이런 전문가를 출장시켰다는 말을 나는 듣지 못하였다.